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78

발의연월일: 2024. 9. 6.

발 의 자:이재관·이병진·소병훈

박용갑・오세희・송재봉

박홍배 • 윤준병 • 강준현

고민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모든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,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(제57조).

한편,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·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「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마련하고 있음.

이에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가입·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임(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3777호), 「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77 6호), 「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77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. 법률 제 호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1항 중 "공무원"을 "공무원(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무원"을 "공무원(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
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57조(정치운동의 금지) ① 공무 제57조(정치운동의 금지) ① 공무 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 원(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제6 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 할 수 없다. 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)--.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 ② 공무원(「공무원의 노동조 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률」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하여서는 아니 된다. 한다)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
1. ~ 5. (생략)

③ • ④ (생 략)